

2021학년도 감곡 행복공감 교육과정 이야기 마당
학부모교육 연수자료

2021. 3. 19 (금)

감 곡 초 등 학 교

56109 정읍시 감곡면 감곡동서로 355

교 장 실 : 571-1047 교 무 실 : 571-1046

행 정 실 : 571-0775 F A X : 571-7338

<http://www.kamgok.es.kr>

차 례

1. 2021학년도 학생 출결 및 학적 관리 계획	1
2.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4
3.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8
4. 불법찬조금 근절을 통한 청렴도 제고	12
5. 학교폭력 예방 교육	13
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14
7. 인권교육 학부모 연수 자료	16
8. 도박 예방 교육	17
9.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교육	18
10. 성폭력(사이버성폭력) 예방 교육	19
11.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21
12. 우리 자녀를 위한 흡연 예방 교육	22
1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23
14. 학부모회 규정(안)	26

2021학년도 학생 출결 및 학적 관리 계획

감곡초등학교

1 출결상황관리

가.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상황' 처리에 따라 지각(또는 조퇴, 결과) 횟수는 결석일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 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기간
-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전화 통보를 통한 담임 교사 확인서나 증빙서류로 출석 인정)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아)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담임교사와 반드시 사전 연락)

- 가) 3일 이상의 질병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 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마)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바) 환경부로부터 가슴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라)~(바)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마)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 바)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사)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5)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6) 장기 결석

가) 연속 5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나)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장기 결석 사유를 입력

나. 지각·조퇴·결과(학생 안전을 위해 원칙적 처리)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적어도 1교시 시작시간(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6)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7)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다.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

(우리 학교는 191일의 3분의 2이상(출석127일(결석64일)) 출석으로 함

2)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였을 경우(미인정 유학 포함)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3)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해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감곡초등학교

1 교외체험학습 운영

-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 ※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3]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예외 인정 가능)
-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참가자	학년	반	번	성명	전화	비고

기간	2021년 월 일(요일) ~ 2021년 월 일(요일)(일간)					
시간	시 분 ~ 시 분 ※반일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장소						
인솔보호자	기간	학생과의 관계	성명	전화		
체험학습 주제	<예시> ■ 국내·외 친지 방문 및 호도 체험학습 ■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 및 체험학습 등					
학습내용						
확인사항	■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학생 : (인)

신청인 보호자 : (인)

감곡초등학교장 귀하

결 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서식 2> :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담임교사용)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성명		학년 반	학년 반 번
신청기간	2021년 월 일(요일) ~ 2021년 월 일(요일)(일간)		
허가기간	2021년 월 일(요일) ~ 2021년 월 일(요일)(일간)		
누적사용기간 /인정기간	일 / 일		
<p>위와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감곡초등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보호자님 귀하</p>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서식 3> : 체험학습 종료후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누 가

감곡초등학교	제 ()학년 ()반 ()번	이름 :
--------	-------------------	------

▣ 언 제

기 간	2021년 월 일(요일) ~ 2021년 월 일(요일)(일간)
시 간	시 분 ~ 시 분 ※반일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 어디에서

교외체험학습 장소	▶
--------------	---

▣ 무엇을, 어떻게, 소감(필요시 사진 등은 뒷면 부착)

무엇을	예) 가정의 가게, 돌아가신 분의 얼, 만난 친척, 추석 민속놀이, 고향의 자료, 추석 상차리기, 기타 국내외 각종 체험
어떻게	※ 구체적인 체험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록
소 감	※ 교외체험학습을 통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술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학생 : (인)

감곡초등학교장 귀하

결 재	담 임
	전 결

※ 보고서 제출기간: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감곡초등학교

1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

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¹⁾ 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1)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나)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다) 불법정보유통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라)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마)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가. 상해와 폭행

1) 상해

가) 개념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신체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나 신체 기능에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

- 손으로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진 경우
- 야구 방망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골절상을 입힌 경우

2) 폭행

가) 개념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어깨를 손, 어깨, 몸 등으로 밀친 경우
- 멍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
- 사람의 신체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경우

다) 유의점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나. 협박

1) 개념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가족 등 제3자를 해코지하겠다는 경우
- 외압을 이용해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경우
- 당신의 집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퇴근길에 해하겠다는 경우

다. 유의점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다. 명예훼손 및 모욕

가. 명예훼손

1) 개념

공연(公然)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어떤 학생이 학생,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특정 여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들에게 “A는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이 전체에서 중간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우리 학교 수학 교사인 그의 매형이 시험 문제를 알려줘서 전체 1등이 되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3) 유의점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나. 모욕

1) 개념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수업 중 학생이 특정 교사에게 ‘병신 같은 ○○놈’, ‘○○년’,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경우
- 특정 교사에 대하여 ‘A선생은 멍청하다, 함량 미달이다’ 등의 비하 발언을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경우

3) 유의점

- 모욕죄는 피해자에 의한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따라서 관할청에서 고발할 수 없으며 피해교원의 고소를 요한다.

라. 손괴

1) 개념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불만의 표현으로 학교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경우
- 학생이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게 불응하면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성범죄

1) 개념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교사의 신체를 접촉하여(포옹이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교사의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하는 경우
- 학생이 교사의 나체를 그림으로 그려 다수 학생들에게 배포한 경우(음화제조·반포)
- 학생이 음란한 동영상, 사진, 내용 등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바. 불법정보 유통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가) 개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계)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채팅방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

-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CCTV에 교사로부터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찍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장면들이 CCTV 화면에 나온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경우

다) 유의점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보다 가중 처벌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가) 개념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전화, 이메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교사에게 구체적 협박이 아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전화, 이메일 또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소리나 문자 또는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아.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의 경우)

1) 개념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공립학교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학생을 찾겠다고, 1시간 동안 교사들이 수업하고 있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가 교실 문을 안에서 잠그자,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어머니가 수업 중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교사의 머리채를 낚아채서 넘어뜨리는 경우

불법찬조금 근절을 통한 청렴도 제고

감곡초등학교

1 목적

- 가. 학교예산이나 상급기관에서 지원되는 예산 및 학부모후원회에서 지원되는 각종 예산의 투명한 운영
- 나.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학교체육활성화에 기여

2 불법찬조금이란

- 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 나.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채,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채 모듬하는 행위 해당
 - 1) 조성주체 : 학교 자생단체 임원(학부모회장, 운동부 후원회장, 동창회장 등)
 - 2) 조성대상 : 학부모회, 동창회원,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등
 - 3) 조성내용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 없이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모금
 - 학부모회 임원이 여러 방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당하거나, 임원회비 납부 강요
 - 운동부 학부모후원회에서 코치인건비 보조 및 전지훈련, 출전경비 명목의 회비 모금

3 불법찬조금 신고처

[불법찬조금 신고처]

- 전라북도교육청 : www.goe.go.kr → 홈-정보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춘지수수,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춘지수수신고 안내 전화 교원인사과 : ☎ 063-239-3309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홈페이지 중앙 하단)한국투명성기구 신문고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 학교길라잡이 → 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02-393-8900, hakbumo@hanmail.net)

학교폭력 예방교육

감곡초등학교

1 목적 및 근거

가. 목적: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

나. 근거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4항)
- 2) 학교폭력 공시 지침(공시내용: 학교폭력 예방 교육계획서)

2 세부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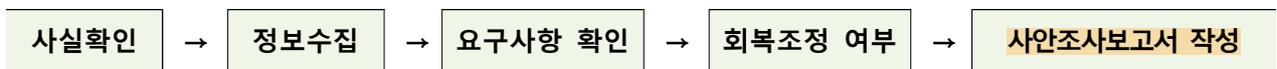
가. 본교 세부 추진계획

- 1)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5명(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보건 담당교사, 학부모 2명)
- 2)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 학기별 2회 이상 실시
- 3) 학교폭력예방 운영학교: 연간 15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다양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 4) 학생자치 다모임 운영: 전교생 무학년제 다모임 활동을 통한 친교프로그램 운영
- 5) 상담활동 강화: 원만한 학교 생활과 학생의 정서지원을 상담 활동 강화(학생,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wee센터 연계상담 등)

3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사안조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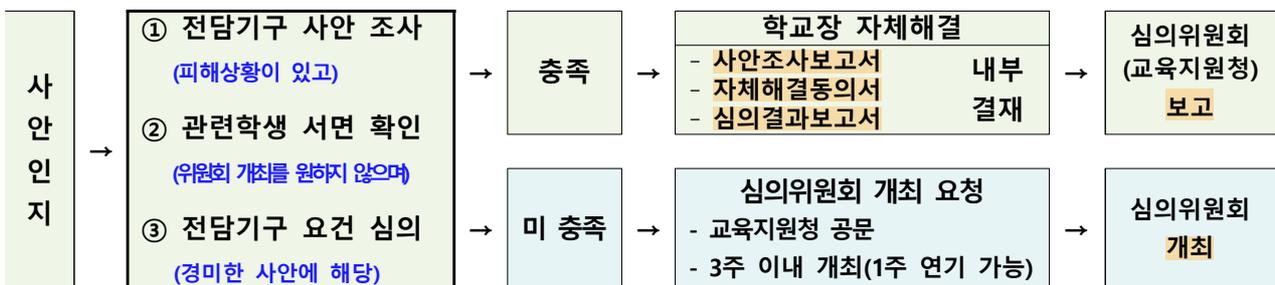
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사안조사

- 1) 학교폭력 사안접수(조사) 및 보호자 통보



- 정읍교육지원청 사안보고(48시간 이내)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회복조정) 및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2) 학교폭력 사안처리 초기 개입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감곡초등학교

1 필요성

- 가. 2014. 1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14.7.22)으로 인한 세부 방침 재수립
- 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행위
- 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가정폭력이란

가. 가정폭력이 정의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나. 가정폭력의 유형



다. 가정폭력 피해지원 기관



3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 아동학대 정의와 발생 요인(*아동이란 18세미만의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1항))

“아동학대 “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구분	요인	결과
 개인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	√ 학대로 인한 사망. √ 아동에게 깊은 상처를 줌. √ 아동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낌. √ 아동의 신뢰가 파괴됨.
 가족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 다른 가족의 죄책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 저하 √ 부모 및 형제와의 다툼 증가 √ 가출
 사회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이 √ 학교폭력, 비행, 자살이 증가함 √ 약물 남용 및 중독 √ 성매매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

나. 아동학대 신고요령

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어떻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번 없이 ☎ 112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다. 올바른 자녀 훈육법- 아이를 야단칠 때 금기사항 5

1)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야단칠 이유는 까맣게 잊고 쌓인 감정을 폭발하며 화를 내는 것은 아이를 야단칠 때 부모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입니다. 아이의 잘못을 훈육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짜증으로 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2) 다른 형제와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의 반발심을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형제자매, 혹은 친구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아이의 심정을 참담하게 만듭니다. 경쟁 심리를 자극해 아이를 잘 되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3) 때리는 건 절대 금물!

들쭉날쭉한 부모의 감정, 신체적 체벌에 자주 노출된 아이는 감정이 풀어지지 않고 상처로 남아 소아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인격 장애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억제되지 않을 때는 일단 자리를 피했다가 잠시 후 아이를 마주하면 극단적인 체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 학부모 연수 자료

감곡초등학교

1 학교와 인권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가. 학생자유권 : 학생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나. 학생복지권 : 학생이 아직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으로부터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봄
- 다. 학생평등권 :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용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함.

2 전북학생인권조례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교사, 관리자, 교육청 등이 지켜야 할 것을 정리하여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나이가 어리거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이 누려야 할 인권의 내용을 공포한 것으로 법적 강제력을 가집니다.

3 상담과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곳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 <http://human.jbe.go.kr>

전라북도의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될 때 상담 및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는 곳입니다.

4 자녀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부모님의 실천

- 가. 자녀의 사생활 존중하기
 - 1) 자녀 일기장이나 휴대전화 몰래보지 않기
 - 2) 자녀 책상, 가방 뒤지지 않기
 - 3) 자녀 우편물, 전자우편 몰래보지 않기
- 나. 안돼!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 긍정적이고 권유형의 표현으로 대화하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겠니?”
- 다. 자녀의 인격 존중하기
 -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기- ‘야, 임마, 이 XX’ 등 감정적 표현 사용하지 않기

도박 예방 교육

1 목적

- 가. 학생 도박예방 정책을 통한 학생 도박 예방 및 해결의 기본적 토대 마련
- 나. 학생 도박문제(중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선제적 도박 예방 교육 실시
- 다. 학교 내 도박문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 라. 전라북도 학생의 건전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2 도박 예방 교육 왜 필요하나요?

- 가. 알코올·약물중독과 달리 걸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단순히 게임과 놀이문화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음
- 나. 학생 도박중독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사안 발생 시 학부모, 교사들의 대응 역량 및 시스템이 미흡
- 다. 청소년기의 도박문제는 성인 도박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경제적(실직, 빚 등), 사회적(가정붕괴, 자살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개입이 매우 중요
- 라. 성적 및 집중력 저하, 불안 및 우울, 친구관계 문제, 가정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도박 관련 사안 대응 절차

- 도박 사안 처리 절차

1. 도박 예방 교육(평상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도박 문제 예방 활동 및 예방 교육 실시▶ 도박문제 선별검사 실시【붙임1】	2. 도박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도박 문제 인식 및 식별▶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선별	3. 위기 개입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기 개입 요청 (국번없이 ☎1336)▶ 교육청 사안 보고【붙임2】
4. 위기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집중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상담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5. 종결 및 재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박 문제(중독) 학생 지속 관리▶ 재발방지를 위한 추수 지도 실시 위(Wee)센터, 위(Wee)클래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위(Wee)센터, 위(Wee)클래스 상담 및 조기 개입 강화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교육

1 인터넷 중독의 유형

- 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보다 정보수집 자체에 집착하여 강박적으로 웹사이트나 자료를 검색하는 상태(정보검색중독)
- 나. 게임에 접속하여, 자기 통제력을 잃고, 병적으로 집착하여 사용하는 상태(온라인게임 중독)
- 다. 문자 혹은 대화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지장을 받는 상태(채팅중독)
- 라. 음란물을 담고 있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강박적으로 드나드는 상태(음란물 중독)
- 마. 국내외에 개설된 게임사이트에 금전을 송금한 후 인터넷상에서 게임을 하는 상태(온라인도박 중독)
- 바.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하여 자기 통제력을 잃고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상태(온라인쇼핑중독)
- 사. 휴대폰(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받는 상태(스마트폰 중독)

3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수칙

- 가. 특별한 목적 없이 컴퓨터를 켜지 않는다.
- 나. 컴퓨터 사용 시간을 가족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다. 인터넷(게임) 때문에 식사나 취침 시간을 어기지 않는다.
- 라. 인터넷 사용 이외에 운동이나 취미활동 시간을 늘린다.
- 마. 컴퓨터 옆에 알람시계를 두어 사용시간을 수시로 확인한다.
- 바. 컴퓨터 사용시간과 내용을 사용일지에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다.
- 사. 스스로 인터넷 사용조절이 어려울 경우, 시간 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2 단계별 증상

- 가. 초기단계: 점점 몰이하는 단계로 수업시간에 졸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 나. 중기단계: 서서히 일상생활 부적응 단계로, 지각, 조퇴, 결석을 자주하게 되며, 거짓말이나 주변 사람을 속이기 시작한다.
- 다. 후기단계: 금단, 내성 및 일상생활 장애 등 증상 심각으로 인터넷 사용 조절이 안되고, 충동적이며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사이버성폭력) 예방 교육

감곡초등학교

1 성폭력은 범죄 행위입니다.

-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는 등 성적인 것과 관련하여 율지않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 성적인 내용의 말과 행동으로 수치심을 갖게 한 경우
 -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생식기 등 중요 부위를 만지는 경우 (친구끼리 생식기를 만지고 도망가는 장난도 성폭력에 해당 됩니다.)
 - 음란물을 보여 주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자주 발생하는 또래 성폭력 사례

- 야한 말이나 사진, 동영상을 카톡, 밴드로 보냄
- 성장이 빠른 친구의 몸에 대해 놀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언급
- 여학생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친구들에게 돌림
- 장난치는 척하면서 슬쩍 가슴이나 상대방의 생식기를 만짐

☞ 무심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성폭력 범죄이며, 처벌 대상임을 지도해 주세요.

2 가족이 함께 배우는 성폭력 예방수칙

- 1) 도움을 요청할 때: 직접 도와주기보다 주위 어른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합니다.
- 2) 위급상황을 가장할 때: 급히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보다 다른 어른이 더 잘 도와줄 수 있으므로 “다른 어른에게 부탁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 3) 친절하게 다가올 때: 기분 좋은 말과 함께 부탁을 하면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안돼요.”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 4) 선물을 이용할 때: 이유 없이 돈이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5) 아는 사람인 척 할 때: 나를 아는 것처럼 다가와 무언가를 묻거나 함께 가자고 하면 부모님께 연락하고 즉시 자리를 피합니다.
- 6) 혼자 있을 때: 만약 혼자 있는데 누군가 왔다면 가족 이외에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하며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 7) 친구끼리 장난으로 생식기를 만질 경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함부로 중요한 부위를 만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럴 경우 단호하게 싫다고 말합니다.

* 그루밍(Grooming)

-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해 접근하는 모든 행동으로 가해자는 아이를 ‘길들이는 과정’, 양육자를 만나면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심어 줌
- 아이들은 성폭력과 친밀감을 구분하기 어렵고, 성폭력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으며, 피해 사실을 쉽게 표현하기 어려움

☞ 그루밍을 깨기 위한 어른들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3 성폭력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구분	주요기능	전화번호
전북해바라기센터	상담 · 의료 · 수사 · 법률지원	☎ 063) 278-0117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	상담 · 의료 · 수사 · 법률지원, 동행서비스	☎ 063) 246-1375
여성긴급전화	긴급 전화상담 및 보호	☎ 1366

4

사이버 성폭력 예방

<사이버성폭력이란>(정의·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 사진·동영상 등 요구·협박 - 다른 사람 사진 성적 합성·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몰래 사진·동영상 촬영하거나 유포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조심해야 할 것>(예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기 ▶ 성별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아이디 사용하지 않기 ▶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 오래 사용하지 않기 ▶ 경찰관은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경찰관 사칭에 주의하기 ▶ 인터넷에서 거래를 할 때 개인정보 노출 주의하기 ▶ 조건만남·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앱 주의하기 	
<이렇게 행동해요>(대처 방법)	
만남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 → 만남 거절하고 대화 중단하기 ▶ 랜덤채팅앱에서 대가성 만남 요구가 들어올 때 → 응하지 않고 캡처해서 신고하기
불법촬영 ·합성영상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 → 즉시 112 신고하기 ▶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 신고하기 ▶ 몸 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았을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 ▶ 지인이 합성된 사진·영상을 봤을 때 →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주기
성적 문자·영상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 → 불쾌함 표현하기 / 대화 중단·신고하기 ▶ 성적인 욕설, 몸 사진·영상을 받았을 때 → 대화 중단·신고하기 ▶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 → '신고/스팸' 누르기 /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기 ▶ 몸 사진전송을 요구받았을 때 → 절대 응하지 않기 / 대화 중단하기
<도움을 요청해요>(신고·상담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든지 도와드려요! ▶ 사건을 수사해주세요 → 경찰(☎112·117 / 앱: 112긴급신고·스마트국민제보 / 학교전담경찰관) ▶ 영상 유포를 막아주세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 상담을 받고 싶어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청소년상담센터(☎1388, www.cyber1388.kr), 여성긴급전화1366(☎136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817-7959, hotline@cyber-lion.com),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십대여성인권센터(☎010-3232-1318, 카톡·틱톡 cybersat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를 입은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 ▶ 주변에 고민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세요. 	

가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

감곡초등학교

1 양성평등이란?

- 양성 중 어느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양성평등을 방해하는 생각들

- 남자는 씩씩하고 용감해야하고, 여자는 얌전하고 다소곳해야 한다.
- 여자는 남자에 비해 의존적이다. 집안 살림은 주로 여자가 하는 일이다.
- 남자는 슬퍼도 눈물을 많이 흘리면 안 된다.
- 남녀가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 여자에게 적합한 직업과 남자에게 적합한 직업은 따로 있다.

3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실천방법

- 양성평등한 태도는 우리 아이들이 성에 제한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개성에 맞게 꿈을 이루고,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해줍니다.

-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합니다.
- 자녀들에게 성 고정 관념이나 편견이 담긴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게~” 또는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게~”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임을 알려줍니다.
 - 평소 가정에서 집안일을 남녀 구별 없이 가족 모두가 서로 도와서 함께 하도록 합니다.
- 진로, 학업 선택, 동아리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고정 관념이 배제되도록 지도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 여자나 남자 모두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직업을 갖고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교육해주세요.
- 학업성취나 수행에 있어 성별의 차이보다 개인의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곧 나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양성평등 -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차별 없이 존중하는 태도
함께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흡연 예방 교육

1 청소년기 흡연의 심각성

-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암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가 2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보다 60세에 이르러 폐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3배 정도 높습니다.
- 청소년 흡연자는 잠재적 성인 흡연자로, 평생 니코틴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 청소년 니코틴 의존의 특징

- 성인 흡연자에 비해 적은 양의 담배를 피우더라도 니코틴 의존이 될 확률이 높음
- 매일 1개비의 담배라도 장기간 피우면 니코틴 의존의 가능성이 높음
- 성인 흡연자의 경우 1일 흡연량이 니코틴 의존과 관계가 깊은 반면, 청소년은 흡연 양보다 매일 담배를 피우는 '매일 흡연자'의 기간이 길수록 니코틴 의존과 관계가 깊음

2 청소년기 흡연의 영향

- 흡연을 하는 학생이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키가 평균 2.54cm 작습니다.
- 니코틴 중독, 폐 기능 및 폐 성장 저하, 천식, 조기 복부 대동맥 죽상경화증을 유발하며, 이후 다른 만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 비흡연 또래에 비해 기침, 가래, 숨참, 천명 등의 증상이 더 나타나며 운동기능 저하가 나타납니다.
- 흡연은 조기 사망의 원인이며, 성인 흡연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초기 증상이 이미 초기 성인기 흡연자에게 나타납니다.
- 청소년 흡연자에게서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이 많이 발견되며 (음주, 본드 흡입 등의 행위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약물 과다복용 및 약물 의존도를 증가시킵니다.

3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흡연율이 높다고 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면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부모가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 국가에서는 국민의 금연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전국 보건소 무료 금연클리닉 운영 :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
- 금연 상담 전화 : 1544-9030 금연콜센터, 금연할 때까지 1년간 전문상담사가 꾸준히 관리
- 금연 길라잡이 : <http://www.nosmokeguide.or.kr>, 다양한 금연 정보와 금연 관리를 제공

-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자녀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습니다.
 -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지 잘 관찰하시고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1 용어의 의미

용어	주체	의미
선행교육	학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 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선행출제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선행학습	학생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2 선행학습의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 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 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 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 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음.

3 진도계획 및 평가문항 검토 개요

구분	초등학교
학년/ 횟수/ 시기	5~6학년 (1~2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 1회 학기말에 검토 실시(연 1회)
과목	(5~6학년) 영어, 수학, (1~2학년): 영어 편성 및 운영 여부 점검
내용	편성·운영 (선행교육) 편성과 교과별 진도계획의 일치 여부(정보공시 자료)
	※1~2학년은 '영어' 편성·운영 여부만 검토
자료	-학교교육과정편성표 -교과진도운영계획서

I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동안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 과정 정상화를 통해 선행교육으로 인해 나타났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2019년 3월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꿈을 이루고 미래를 여는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공교육의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II 공교육정상화법, 이렇게 운영됩니다!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

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입학예정학생 대상 예비수업은 이전 학교급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 입학예정학생 대상 반편성고사 평가는 이전 학교급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 전형 마련

-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 논술, 면접, 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 학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 실시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운영, 선행교육방지대책,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 심사·의결
-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시, 학교 및 대학에 시정 및 변경 명령하고, 미이행시, 학생정원·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행정·재정적 조치



III 공교육정상화법, 무엇을 규제하나요?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시행 단위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전 · 중 · 고 · 고교 학력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선행학습 유발행위 (평가)	재학생	교과 평가 (지필·수행 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 (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대회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입학 예정 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대학별고사	응시 학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IV 공교육정상화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Q.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행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A.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 말투드라지만, 이 법을 만들 때 2019년 2월 28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던 일부 선행교육의 허용 기한이 2025년 2월 28일로 연장 되었어요.



Q. 어떤 선행교육의 허용 기한이 연장되었나요?



A.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농산 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고등학교의 '방과 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이 그때까지 허용됩니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특설일에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 교육을 할 수 있어요.



Q. 두 번째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허용입니다. 이는 2018년 3월부터 금지되었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 하면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이제 놀이·활동 중심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요.



Q. 그렇군요! 이런 법 개정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충분한 학업 기회 보장과 사교육이 감소 효과를, 초등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즐겁고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네요.



학교자치-학부모회 운영

감곡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안)

제1조(목적)학부모회는 감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학부모회의 명칭은 '감곡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기능)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다만, 졸업한학생의 학부모 중 학부모회 임원은 임기만료일까지 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임원의 구성)

-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둔다.
- ② 회장, 부회장, 총무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하되 균형적인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 총회일까지로 하며,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도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 회장은 1년을 임기로 한다.(결격사유가 없을 시 중임 가능)

제7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총무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보고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감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회원의 3분의 1이상 찬성시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총회)

- ① 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서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 때, 회원 수는 총회 개최 14일 전 학생 재적수를 기준으로 함)
- ④ 총회소집은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장은 예·결산 및 학부모회 활동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③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 ④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해산)

-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
-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3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4조(재정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학부모회 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개정 및 시행)이 규정은 2021학년도 학부모 총회의 의결(2021. 3. 19.)을 거쳐 개정하여 시행한다.